

백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정 2012. 03. 01

제 1차 개정 2021. 12. 09

제 2차 개정 2023. 11.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백산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인권 보호

제6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학교 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병력, 장애, 언어 등 신체 조건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를 가진다.
- ② 다문화 가정 학생, 북한이탈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② 미혼모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생리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9조【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11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생 징계는 학생의 성장을 돋는 방향으로 교육적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선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교내생활

제13조【기본품행】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최소화 한다.)

제16조【교우관계 및 이성교제】교내에서는 교우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

- ①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해서 담당 부서에 등록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동아리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로 둘 수 있다.
- ③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용의사항】

- ①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에 명찰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학생의 두발은 자유롭게 기르되 되도록 남학생 옆머리는 귀를 닿지 않게 하고 여학생은 단정하게 묶거나 풀고 다닌다.
6. 단정한 목걸이 및 팔찌는 허용하되 보석 종류의 고가 제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체육이나 실습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액세서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8.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9. 교복은 변형하지 않는다.

② 동.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가. 동 복 : 10월 1일 ~ 5월 31일
나. 하 복 : 6월 1일 ~ 9월 30일

제1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및 외출】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외출할 때에는 선생님의 허락 및 외출증을 받아야 한다.
- ④ 외출할 때에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나가야한다.

제2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3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계법이나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 한다.
-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또는 소지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 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 시 받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수업 중 적발 시 1주일간 유치 후 돌려준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5절 학생회

제26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관장사항】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30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학급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2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② 문예창작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④ 학교생활안내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⑤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33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이며 학생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 학생생활의 제반 문제 제기 및 심의 의결
- 학생회장 개정에 대한 심의
-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 회의는 필요시 학생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 학생회의에서 부결 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5조【회칙 개정】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4장 학생지도 및 체벌

제1절 생활지도

제36조【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필요시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반 을 운영한다.
-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7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8조【벌의 종류】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을 금하고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지벌이나 덕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학생체벌】어떠한 경우라도 학생 체벌은 금한다.

제40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5장 징계

제41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42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학생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학생생활지도협의회의 소집】학생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44조【학생생활지도협의회의 사안설명】학생생활지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45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의는 구두로하고 반성문을 제출한다.
- ② 학교내봉사 : 3일 ~ 6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사회봉사 : 7일 ~ 10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교육환경전환 처분 :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협의회 의결에 따라 교육환경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처분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방법】

- ① “주의” 및 “학교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시.도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④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징계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징계에 의한 ‘학교내 봉사’ 및 ‘사회봉사’는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48조【징계의 세부사항】징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업 부적응 및 방해 학생 징계(학생생활지도협의회 개최 없이 시행)
- (제12조제6항) ---<생략> 다만, 제3호(수업중 교실밖 분리) 및 제4호(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고시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요건, 분리장소 및 시간, 실시 절차, 학습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야 함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생생활지도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 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 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본관 1층 '학생회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 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 생을 본관 1층 '학생회 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 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内外)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 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 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 우	본관 1층 '학생회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한

- (제12조제9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생략>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고시에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함

[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생생활지도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2조제9항에 따라 일과 시간동안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는 물품	일과시간	해당 담임교사 지정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시간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일과시간 중 수업 및 학습과 관련된 활동으로 부득이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경우 :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나, 수업 중 다른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경우, 제12조제 6항의 제 3호 '가'의 주 의와 함께 즉시 분리보관이 가능함.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BB탄 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1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p>※ 학교는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p>※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 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③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과별 특별과제 부여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④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⑤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을 이수 한다

⑥ 교육환경전환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환경전환이 될 때까지 학교내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제49조【심의 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50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를 소환하여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1조【징계유보】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2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3조【징계해제】 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5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징계기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교육환경 전환
예절	1	예의·용의·언행이 바르지 못하고 불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법	4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수업이나 행사 등 학교교육과정에 무단 불참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되거나 경찰에 구속 석방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풀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수업	11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input type="radio"/>				
	12	수업을 거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3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4	폭력 등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5	기타 감독교사가 탄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	시험을 거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7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근태	18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항	행 위 내용	징계				
			주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교육환경전환
약물	1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20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2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폭력	21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22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23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도, 가담한 학생		○	○	○	○
	24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퇴폐	25	불법도박사이트 등 도박을 한 학생	○	○	○	○	
	26	학생출입 금지 된 장소에 출입 한 학생	○	○	○		
	27	음란영상물을 소지 및 시청한 학생	○	○	○	○	
	28	불건전한 이성 교재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금품	29	금품을 절취, 갈취, 사취, 강탈한 학생		○	○	○	○
	30	물품을 강매하거나 강제로 물물교환 한 학생	○	○			
집단	31	불량 써클을 조직 운영 및 가입한 학생		○	○	○	○
	3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33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한다.		○	○	○	○
기타	34	징계 기준 외의 사안은 선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한다.	○	○	○	○	○